



大學評價認定制의 외국 사례

—美國을 중심으로—

李鍾昇
(本協議會政策研究部長)

1. 評價認定의 概念과 類型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中央集權보다는 地方分權 제도를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의식은 특히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교와 교육 문제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드립과 더불어 헌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고, 교육은 각 주의 州政府가 관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학을 설치·인가하고 규제하는 권한은 주 정부에 속하였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종교 재단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거의 완전히 자율적으로 설립·운영하도록 방임하였다.

이같은 방임 정책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이 출현하게 되었다. 19세기 말까지 미국 전역에 수 많은 대학들이 문을 열었으나, 질적 수준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千差萬別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Selden(1960, p. 28)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난 세기 말엽의 대학교육은 매우 혼돈스러운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각종 고등교육 기관, 예컨대 사범학교, 사범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음악학교, 단과대학, 종합대학 등이 우후죽순처럼 창설되었고, 가르치는 과목도 농업에서부터 동물학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학문적 기준이 없어 입학 자격이나 수업 연한 등이 대학마다 제각기 달랐고, 심지어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大學의 概念에 대한 공통된 정의조차 없었다.”

고등교육 기관들 간의 격심한 질적 차이를 줄이고, 고등교육의 질을 일정한 최소 수준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색된 방안이 미국의 高等教育評價認定制度(accreditation system)이다. 대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대학 입학의 자격 조건을 규정하려는 노력에서부터 비롯된 이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미국 특유의 제도이다. ‘평가인정’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개념 정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Selden(1960, p. 5)은 評價認定이란 ‘평가인정 기구가 특정한 대학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미리 설정해 놓은 기준 또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Young(1983b, p. 21)은 ‘평가인정이란 어느 한 고등교육 기관이 그 교육 활동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체 평가한 다음, 외부의 독립적 평정 기구로부터 해당 기관이 본래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으며, 다른 유사한 교육 기관들과 절적인 면에서 동등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받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 진술 속에 포함된 핵심적 요소는 ① 분명히 전술된 기관의 教育目標, ② 그러한 교육 목표의 달성을 여부에 대한 自體評價, ③ 몇몇 등급 집단에 의한 現地訪問評價, ④ 독립적 평가인정 기구에 의한 최종 判定 등이다. 한편, 고등교육 평가인정기구 협의회(Council on Postsecondary Accreditation: COPA, 1988, p. 3)에서는 평가인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평가인정은 어느 한 교육 기관이나 그 기관내 특정 교육 프로그램의 성취 수준과 질적 수준이 교육계와 일반 대중의 신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공인하는 제도'라고 정의한다.

이상의 개념 정의를 종합해 보면, 평가인정 제도는 어느 한 교육 기관이나 그 기관내의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평가인정 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基準이나 資格條件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公認받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인정'이 어떤 法律的拘束力を 갖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설정해 놓은 최소한의 質的水準에 도달하였음을 인정하고, 회원 교육 기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어느 고등교육 기관이나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 評價認定 目錄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전문 사회의 공신력이 될 수 있고 교육의 수요자에 대하여는 신용을 표시해 주는 것이 된다(이형행, 1981, p. 331).

評價認定의 類型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하나는 機關評價認定(institutional accreditation)이고, 다른 하나는 專門分野別評價認定(specialized accreditation)이다. 기관 평가인정이란 개별 고등교육 기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그 기관이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 기관 나름대로 사전에 설정해 놓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어느 특정 종합대학교를 평

가 대상의 총체적인 단위로 잡고 평정하는 것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에 비하여 전문 분야별 평가인정은 어느 한 고등교육 기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특정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협의회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평가인정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目的, 基準, 節次 등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다. 다만 기관 평가인정과 전문 분야별 평가인정에서 각각 강조하는 사항이 서로 다를 뿐이다. 기관 충실 평가인정에서는 한 기관 전체를 개괄적으로 평가하여 그 기관이 이미 평가인정을 받은 다른 기관들로부터 새로운 회원 기관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평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비하여 전문 분야별 평가인정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준거에 따라 전문 프로그램이나 학과의 특성을 평가하고, 그 프로그램 또는 학과의 졸업생이 해당 전문 분야나 업체에서 자격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를 평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한 單位機關이 평가인정을 받는 것과 특정 專門分野가 평가인정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예컨대, 하나의 종합대학교가 그 대학 전체를 단위로 하여 평가인정 받았다고 해도 그 대학교 내의 모든 학과나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적 평가 기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특정한 전문 분야가 매우 우수한 평가인정을 받고 있으나, 그 기관 전체적으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2. 評價認定制度의 目的과 機能

미국의 大學評價 歷史는 뉴욕주에서 州 안에 설치된 모든 대학들을 매년 방문하여 각 대학의 교육과정과 업적을 주 의회에 보고하도록 법률로 결정한 1787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평가인정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후의 일로 미국 중북부 지역 중등학교 및 대학 협의회가 12개 항목의 구체적인 평가인정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 목록을 발간한 1913년부터로 잡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Harclerode, 1980, p. 21). 이 목록에는 14 개 주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73 개의 다양한 고등교육 기관 이름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관 평가인정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전문 분야별 평가인정의 역사는 기관 평가인정 보다 약간 앞선다. 즉, 미국의학회가 1906년에 전국 모든 의과대학의 질을 평정하여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도입한 후 그 첫번 보고서를 1910년에 발간하였는 바, 이때 비록 ‘評價認定’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전문 분야별 평가인정의 시작이라고 하겠다(Young, 1983a, p. 3).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미국의 고등교육 평가인정 제도는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대학교육을 정의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中等教育과 高等教育이 어떻게 連繫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 합의를 구하는 문제에 노력을 집중시켰다. 고등교육의 발전 과정에 따라 평가인정 제도는 변화되어 왔으며, 미국의 사회 변화와 고등교육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지금도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목적과 機能도 상황 변화에 따라 그때 그때 다소 달라지고 있으나, 최근 COPA(1988, p. 5)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準據와 指針의 개발을 통하여 高等教育의 質的 向上을 도모한다.

② 계속적인 自體研究와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③ 특정한 고등교육 기관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명확히 정의된 적절한 교육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을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현재 그러한 교육 목표를 성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목표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계, 일반 대중, 기타 정부 기관이나 단체에 보증한다.

④ 기존의 유명 고등교육 기관이나 발전 도상에 있는 고등교육 기관에 대하여 자문과 협조를 제공한다.

⑤ 교육의 효과나 학문의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침해로부터 고등교육 기관을 보호한다.

이상과 같은 평가인정 제도의 목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기되는 의문 내지는 문제가 있다. 그 중 두 가지 문제만을 뽑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Young, 1983b, pp. 23~24).

첫째, ‘最小基準(minimum standards)’에 관한 문제이다. 최소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누가 어떻게 그 기준을 설정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평가인정 기구와 같은 외부 기관에 의해서 평가 기준이 설정된다거나, 그 기준의 내용은 교수 대 학생의 비율 혹은 도서관의 장서 수와 같은 객관적이고 양적인 지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식으로 간혹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대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한 평가 기준에 기초하여 평가인정이 이루어진다. 평가인정이 여러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련의 질서 있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나가기 때문에 큰 과오나 극단적 편견은 배제될 수 있다.

둘째,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 대신에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작용하게 되는 ‘適合性’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는 문제이다. 즉, 누가 어떻게 교육 목표 또는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목표의 적합성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방법은 내세운 목표들이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교육 목적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 목표들이 고등교육의 개념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편, 미국 연방정부 교육국(U.S. Office of Education, 1980, p. 1)은 評價認定機構의 機能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대학 또는 대학내의 특정 전문 분야 교육 프로그램이 평가인정 기구에서 설정한 일정 수준에 도달하여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② 대학 지망생들에게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전학이나 편입학을 하려는 학생들의 학점 인정에 관한 기준을 제공해 줌으로써 학교측에 도움을 준다.

④ 고등교육 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개

인이나 공공 단체에게 수혜 대상이 될 기관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⑤ 학교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대학을 보호한다.

⑥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취약한 프로그램의 자체 개선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한다.

⑦ 교직원들로 하여금 학교의 발전 계획 및 자체 평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⑧ 전문 분야의 자격이나 면허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러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킨다.

⑨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자격 기준을 정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평가인정 제도의 기능은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에 열거된 여러 항목의 내용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즉, 대학의 내적 활용은 물론 그 밖에 전문 분야에서의 활용, 일반 사회적 활용 등 다방면으로 이용될 수 있다.

3. 評價認定機構 및 調整機關

評價認定機構는 기본적으로 기관 평정 기구와 전문 분야별 평정 기구로 구분된다. 그런데 기관 평정 기구는 관할 지역에 따라 다시 지역별 기관 평정 기구와 전국적 기관 평정 기구로 나뉘어진다.

평가인정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소수의 지역별 평가인정 기구와 전문 분야별 평가인정 기구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고등교육 기관의 숫자가 늘어나고 학문 영역이 세분화됨에 따라 다양한 평가인정 기구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후 고등 교육 기관의 팽창은 다양한 평가인정 기구의 수요를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평가인정 제도는 급 속히 발전하였으나, 각 대학에 대하여는 새로운 문제점을 안겨 주었다. 소규모 단과대학은 지역별 평가인정 기구의 기관 평가와 몇몇 전문 분야의 평정을 받으면 되었지만, 대규모 종합대학 교의 사정은 달랐다. 즉, 지역별 평가인정 기구

의 기관 평가에 더하여 대학 교내에 설치된 각 단과대학 및 수 많은 전문 분야별 프로그램의 평정을 받아야만 되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되는 高等教育機關과 평가의 주체가 되는 評價認定機構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볼 수 없다. 각 대학들은 평가인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평가받는 그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평가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평가인정 기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평가인정 기구의 수가 많아지고 평정 기구 간에 그 基準이나 評價節次에 있어서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함으로써 평가를 받는 각 대학이 겪는 불편과 부담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었는데, 이 점에 대하여 이성호(1983, p. 63)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나의 대학이 1년에 몇 차례씩 이곳 저곳 서 러드는 혼장 방문 평가반을 맞이하고, 그때마다 각 기 다양하게 요구하는 자료 준비 등을 대부분의 대학에서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며 전적으로 그 일에만 연중 무휴로 매달리게 해도 부족할 만큼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 각종 일반적 및 전문적 업적 평정 기구들 간에 유기적 조정과 협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피평정 기관뿐이다.”

많은 대학들이 각 평정 기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정의 기준과 요구 조건의 다양성, 수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와 방문 평가에 대한 준비 등으로 크게 시달리고 유형·무형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 평가인정 기구들이 전문 영역별로 분화하면서 그 숫자가 계속 증가하자, 고등교육 기관의 책임자들은 군소 평정 기구의 난립을 억제하고 기존 각 평정 기구들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1949년에 전문 분야별 평가인정 기구들의 연합체인 ‘全國評價認定委員會(National Commission on Accrediting: NCA)’가 발족되었다. 한편, 1964년에는 기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6개 지역별 평가인정 기구들의 조정 기관으로 ‘地域聯合 大學評價認定委員會’(Federation of Regional Accrediting Commissions of

Higher Education: FRACHE)'를 설립하였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평가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공동으로 연구하여 6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공통적인 평가인정의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었다(Kirkwood, 1982, p. 10).

1975년에 NCA와 FRACHE를 통합하여 '高等教育評價認定機構協議會(Council on Postsecondary Accreditation: COPA)'라는 새로운 조정 기관을 창설하였다. 현재 COPA(1988, p. 5)에는 지역별 기구 9개와 전국적 기구 6개의 기관 평가인정 기구가 있고, 전문 분야별 평가인정 기구는 39개로서 총 54개의 평가인정 기구를 거느리고 있으며, 대략 6천 개의 고등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인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5개 상임위원회가 있다.

① 집행위원회: 이사회와 안전 및 일정을 계획하고 예산과 재정 계획을 세우며 그밖에 협의회의 일반 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인정위원회: 기관 또는 전문 분야별 평가인정 기구의 신설 요구를 검토하여 인가하고, 기준 평가인정 기구의 실적을 분석하며, 평가인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한다. 또한 평정 기구들 간의 협력과 조정 문제 등을 취급한다.

③ 재판제위원회: 이사회에 대한 자문역을 수행하는데, 특히 협의회가 주 정부나 그 산하 기관과 관련 있는 정체를 결정하는 일을 돋는다.

④ 전문개발위원회: 평가인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전담한다.

⑤ 임명위원회: 이사회의 의장 및 회계사, 집행위원회의 일반 위원직, 일반 대중의 대표직 등의 자리에 자격 있다고 추천되거나 선출된 인사들을 심사하여 임명한다.

COPA는 그 산하에 있는 여러 평가인정 기구들이 미국 고등교육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질적 수월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각각 교육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조정하는 일을 한다. 이를 위하여 기준 평가인정 기구들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분석·검토하는 것은

물론 새로 설립을 신청하는 評定機構의 設立妥當性을 면밀히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인가해 준다. COPA의 창설로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평가인정 제도와 관련하여 평가 기준이나 절차 등의 문제를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을 갖게 된 셈이다. COPA는 평가인정에 관한 연구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평정 기구들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직접적 개입을 최소화시키면서 민간 주도의 평가인정 기구에서 평정 업무를 주관하되,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각계 각종의 일반 대중들에게 미국 고등교육 기관의 실상과 질적 수준을 알려주고 그들의 이해를 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COPA, 1988, p. 4).

4. 評價認定의 基準과 節次

기관 중심 평가인정이냐 또는 전문 분야별 평가인정이냐에 따라 각각 強調事項이 서로 다르고 사용하는 用語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지역별 평가인정 기구와 전국적 평가인정 기구에 따라서도 評價認定의 基準이 상호 다른 경우가 있다.

Petersen(1979)은 52개의 평가인정 기구에서 제각각 설정해 놓은 평가 기준을 분석한 바 있다. 그녀는 이들 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평가 기준을 ① 교육 목적과 목표, ② 통치·행정·조직, ③ 교수진, ④ 교육과정, ⑤ 학생과 학생봉사, ⑥ 도서관 또는 교수 자료 센터, ⑦ 시설과 장비, ⑧ 재원 등으로 분류하고, 평가인정에서의 강조 사항,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일반적인 공통점은 ① 평가인정의 기본 목적은 교육의 질의 유지와 보장에 있으며, ② 평가인정에 사용되는 접근 방법은 주로 目標指向의이며, ③ 평가 기준은 量的 용어보다 質的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인정 기준의 詳細化의 정도에도 평정 기구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관 평가인정의 기준보다 프로그램 평가인정 기준이 더욱 구체적이며 양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Hagerty 와 Stark(1989)는 경영학·교육학·법학·간호학·약학 등 10개 전문 분야의 평가 인정 기구를 대상으로 각 전문 평정 기구에서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평가인정의 기준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평가 기준은 교육 목표(87%)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 목표 다음으로 강조되고 있는 평가 기준은 시설 및 자원(76%), 교수진(72%), 교육과정(70%), 학생(60%), 행정 및 통치(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몇몇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評價認定의 基準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① 교육 목표,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③ 학생 선발, 학생 지도 등 학생에 관한 사항, ④ 교수의 인사 문제를 비롯하여 연구와 사회봉사 등 교수에 관한 사항, ⑤ 시설 및 설비, ⑥ 행정 및 재정 등이다.

評價認定의 節次는 평정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상의 구성 요소와 단계는 대개 비슷하다. 다음에 하나의 예시로 경영학과 석사과정 프로그램의 평가인정 절차를 소개한다(American Assembly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 1988, pp. 3~6).

• 1 단계 : 대학 당국의 책임자가 해당 평가인정 기구에 평가인정을 받기 원한다는 지원서를 제출한다.

• 2 단계 : 평정 기구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 양식(self-study report form)을 받아,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는 교수진, 교육과정, 도서관 및 기타 교육 시설, 재정 상황 등 설정된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다.

• 3 단계 : 자체평가보고서를 평가인정 기구에 제출한다.

• 4 단계 : 평정 기관에서는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를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현지 방문 평가팀을 대학에 파견한다. 현지 방문 평가에서는 면접과 관찰을 통하여 자체 평가의 내용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과의 차이 또는 불일치를 확인·점검한다. 그리고 평가팀 나름대로 현지방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 5 단계 : 현지 방문 평가팀이 작성한 보고서를 대학 행정 책임자와 평정 기구에 제출한다.

• 6 단계 : 자체평가보고서, 현지 방문 평가팀의 보고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 책임자의 의견이나 異議 등을 모두 수합하여 평정 기구내 평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7 단계 : 평정 결과를 해당 대학 행정 책임자에게 서면 보고하고,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회원 대학 목록에 등재하고 공표한다.

5. 當面問題와 展望

미국의 고등교육 평가인정 제도는 자율적으로 고등교육 기관들 간의 격심한 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최소 수준 이상으로 각 고등교육 기관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하에 시작되어, 그동안 고등교육의 변천 과정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하여 왔다. 지난 약 80년간 계속 시행되어 온 이 평가인정 제도는 高等教育機關의 自律性을 신장하고 教育의 質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의 규제가 아닌 自律規制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면서 미국 고등교육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 제도의 근본 목적 및 시행과 운영에 대한 많은 비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부터 등장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등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중심으로 평가인정 제도에 대하여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중요한 問點 내지는 問題點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Young, 1983b, pp. 32~33).

① 必要性에 관한 문제

평가인정 제도는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제도는 중요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가? 그러한 요구를 현행 평정 제도 이외의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가? 투입되는 노력과 비용 면에서 이것이 효과적인 제도인가?

② 目的에 관한 문제

평가인정의 일차적 목적을 ‘질적 개선’과 ‘질 보장’ 중 어느 쪽에 두어야 할 것인가? 평가인정 제도는 이 두 가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가?

③ 評定機關의 性格에 관한 문제

평가인정은 정부 주도적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간 주도적이어야 하는가? 그동안의 평가인정 제도가 사실상 정부 주도적 또는 준정부 주도적 성격을 띠지 않았는가? 순수한 자율적 민간 기구에 의한 평가인정제가 정부의 목적과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가?

④ 高等教育의 公共性에 관한 문제

평가인정 제도는 교육의 질과 교육 기관의 통합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가? 이 제도는 각 교육 기관이 추구하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는 목적과 평가인정 기구에서 강조하는 고등교육의 질적 보장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제도인가? 평가인정제가 과연 외부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에만 의존할 수 있는가?

⑤ 校園評定에 관한 문제

어느 한 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 학과나 단과대학이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기관 평정에 의하여 그 기관 전체의 교육의 질을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가? 기관 평정을 할 때 앞으로도 계속 각각의 개별 프로그램(특히 어떤 프로그램이 母機關으로부터 지리적으로나 조직 체계상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을 면밀히 평가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인가? 근래 급속히 증가 추세에 있는 비전통적인 고등교육 기관들, 예컨대 하계 학교나 야간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에 대한 기관 평정을 실시할 것인가?

⑥ 專門分野別評定에 관한 문제.

만약 기관 평정이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 전문 분야별 평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기관 평정에서 취급하지 않는 어떤 중요한 것에 국한시켜 전문 분야별 평정을 하게 된다면,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일이 전문 평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전문 분야별 평가를 기관 평가와 통합하거나 협동적으로 할 수는 없는가?

⑦ 自體評價와 自律規制에 관한 문제

평가인정과 관련하여 수행하게 되는 자체 평가와 자율 규제를 각 기관에서는 평가적 가치 이외의 어떤 다른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는

없을까? 만약 그럴 경우, 이것은 평가인정제를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약화시킬 것인가?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爭點과 미해결의 課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고등교육 평가인정 제도는 앞으로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연방 정부나 주 정부가 고등교육 기관의 평가인정에 직접 관여하려는 것을 명분있게 차단하고, 또한 대학 사회에서 자율적으로 高等教育의 質的 統制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그레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평가인정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① 量的인 접근 방법 위주에서 탈피하여 質的 접근도 조화롭게 적용하고, ② 劍一的인 기준에 의한 평정으로부터 각 기관의個性과 特性을 살리는 평정으로, ③ 외부 평가팀 중심 체제에서 自體評價와 自律規制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④ 인정·불인정의 判定 중심으로부터 각 교육 기관 스스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평가인정 제도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参考文献〉

- 이성호(1983), “미국의 고등교육 업적 평가인정 제도와 기구”, 대학교육, 장간호, pp.58~66.
이형평(1981), “고등교육 평가인정 제도”, 강길수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편), 한국 교육행정 학의 발전, 서울 : 배영사, pp.321~354.
American Assembly of Collegiate Schools of Business(1988), Accreditation Council Policies, Procedures, and Standards 1988~'89, St. Louis, Missouri: The Author.
Council on Postsecondary Accreditation(1988), The COPA Handbook, Washington, D.C.: The Author.
Hagerty, B.M.K. & Stark, J.S.(1989), “Comparing educational accreditation standards in selected professional field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60, No.1, pp.1~20.
Harclerode, F.F.(1980), Accreditation: History, Process, and Problems, Higher Education Research Report No.6, Washington, D.C.: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

- Kirkwood, R.(1982), "Accreditation", in Mitzel, H.E.(ed.),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5th ed.), New York: Free Press, pp.9~12.
- Petersen,D.G.(1979), *Accrediting Standards and Guidelines: A Current Profile*, Washington, D. C.: The Council on Postsecondary Accreditation.
- Selden, W.K.(1960), *Accreditation: A Struggle over Standards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Harper & Row.
- U.S. Office of Education(1980), *Nationally Recognized Accrediting Agencies and Associations*, Washington, D.C: Division of Eligibility and Agency Evaluation, U.S. Office of Education.
- Young, K.E.(1983a), "Prologue: the changing scope of accreditation", in Young,K.E. et al.,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p.1~15.
- Young, K.E.(1983b), "Accreditation: complex evaluative tool", in Young, K.E. et al.,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p.19~35.
- Young, K.E. et al.(1983), *Understanding Accredi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